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8.(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한선미 의원 외 10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한선미 의원 외 10명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04)

2. 제안이유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 가야 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민간전문가 활용 (안 제8조)
- 바.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기 위하여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 등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정신적·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의미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일명 ‘대구 간병살인사건’(22년 3월 대법원 징역 4년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졌음. Young Carer(가족돌봄 아동·청소년)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제도적 인지가 없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녀 또는 효자로 호명되고, 칭찬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며 별다른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가늠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해외 국가들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은 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국회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 관련 상위법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 * 법안명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 * 발의자 : 서영석 의원 외 22인
 - 서울시 자치구 사례로는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 청(소)년 사업’ 단독 시범 구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례로도 소개되었습니다.

○ 종합 검토의견

- 영 케어러는 일상가사, 환자수발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또래 사이에서의 고립감 심화, 생계유지의 어려움, 미래 투자의 부족과 같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갑자기 돌봄이 시작됨으로써 의료, 복지, 행정 등의 통합적인 정보가 부족해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영 케어러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준비가 미흡하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자아를 계발하고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는 인력,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안제9조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타 분야에 청년·청소년 정책들과 중복 여부가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민생활 지원과	신희선 (8810)	송희정 (88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지원사업) 제1항제1호~제7호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강지화
연락처	02-3153-8846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